

등록번호	총무과-9722	안전보건관 리팀장	총무과장	사무국장직 무대리	총장	
등록일자	2022. 12. 28.	문장호	윤세훈	윤세훈	2022. 12. 28. 반선섭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구분	공개	협조				

2023년 강릉원주대학교 중대재해 예방추진 계획(안)

2022. 12.

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1

수립배경 및 목적

- **국립대학 현업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20.1.)**
 - ①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 관리, ②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③조리실무 및 급식실 운영 업무 관련자 등 현업 종사자*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 수립 등 법령상 의무사항 조치 필요
 -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62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 1. 27.)**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설치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및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의무가 경영책임자(총장)에게 부여 되며,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및 벌금 부과
 - 총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중대재해 처벌법상 경영책임자
 - (중대재해)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공공기관의 현업근로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연구활동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업체 근로자 등의 사고에 적용

- **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사업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형사처분 대상 및 형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이상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의무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조치 - 위험기계, 위험물질 사용 시 - 조작, 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 추락, 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보건조치 - 분진, 흙, 병원체 등 건강장해 - 고온, 저온, 소음 등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등 인체 부담작업 -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미유지로 발생한 건강장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④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 편성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⑥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⑨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② 인력, 예산 지원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2

안전·보건 목표, 비전 및 경영방침

비전

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목표

산업 안전·보건 역량강화로 재해없는 근로환경 조성

전략

경영책임자의 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추진 과제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이행

2.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여부 점검(수시·정기)

3.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5.

종사자 의견 청취, 수렴 및 개선여부 점검

6.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점검

7.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8.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

< 안전·보건 경영방침 >

강릉원주대학교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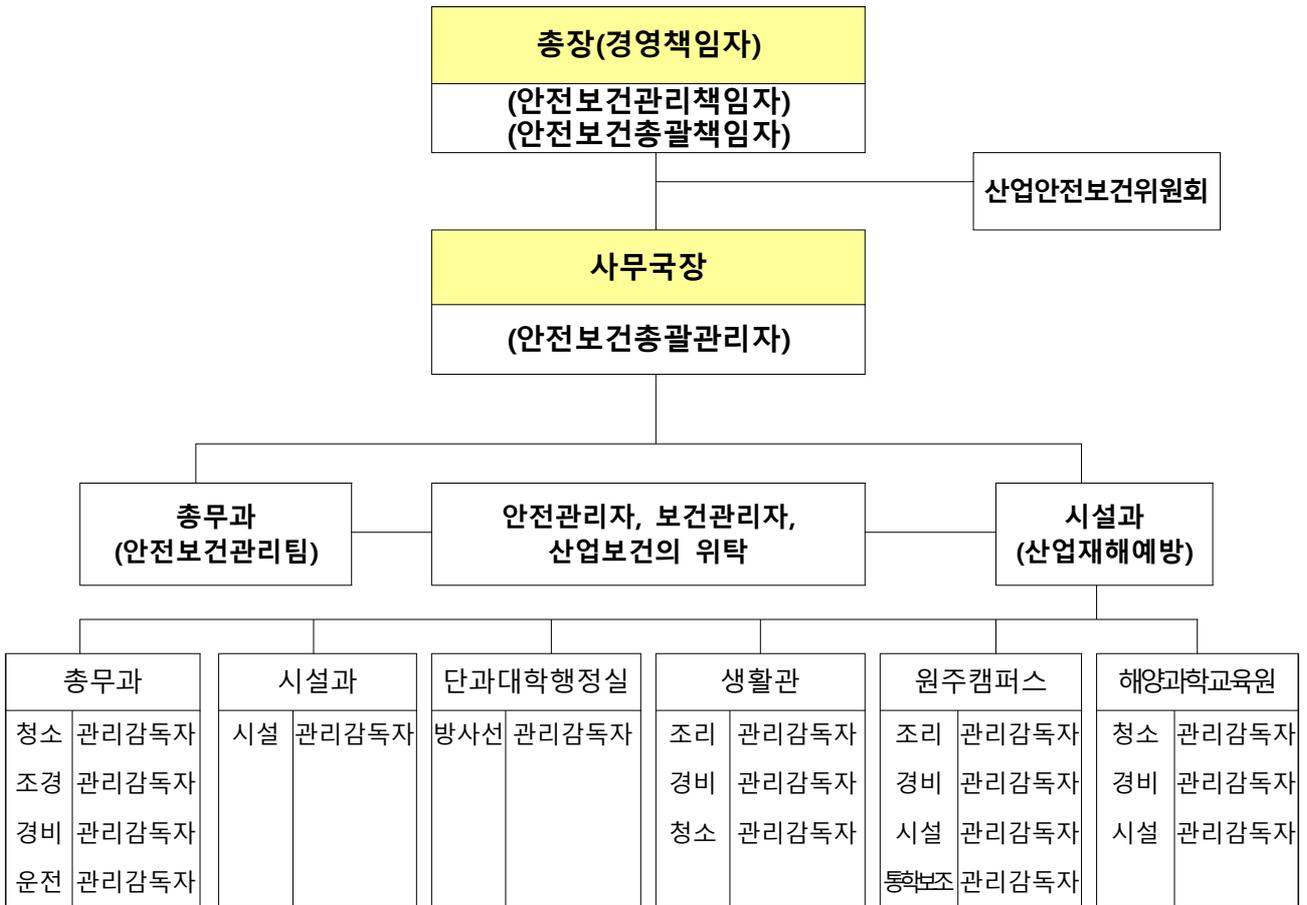
1. 모든 구성원의 생명보호와 건강·안전 증진을 위해 ‘재해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안전·보건 목표로 삼는다.
2.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법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은 책임과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3. 강릉원주대학교는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조직의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4. 모든 구성원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제거하는 등 재해예방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5. 도급·용역·위탁 등의 협력관계자가 우리 대학의 안전보건 방침과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6. 모든 구성원은 상호 존중과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3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의 구축 및 이행

□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



* 사무국장을 안전보건총괄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산업 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총괄·지도하도록하며, 현업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과·실장이 사무국장을 보좌(관리감독자 지휘 등)하도록 함

□ 역할과 책임

구분	주요 역할
경영책임자(총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사업 대표 및 총괄
안전보건총괄관리자 (사무국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총괄·지도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에 대한 지휘·감독
관리감독자 (현업업무 담당팀장, 담당자)	현업업무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조의 업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8조의 업무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9조의 업무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전문기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의 업무 *산업보건의 전문기관에 위탁

4

세부추진계획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실행

- (법적의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시행령 제4조제1호)

- (조치계획)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모든 구성원에게 주기적 안내 및 실행

< 안전·보건 경영방침 요약 >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적극 실천

- 구성원의 생명보호와 건강·안전 증진을 위해 ‘재해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안전·보건 목표함
-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법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은 책임과 의무 이행
-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조직의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 지원
-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제거하는 등 재해예방과 개선을 위한 활동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협력관계자가 우리 대학의 안전보건 방침과 요구 사항을 준수
- 구성원은 상호 존중과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 조성

②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

- (법적의무) ①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②확인·개선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 조치 실시(시행령 제4조제3호)
- (조치계획) 해당 업무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개선 여부 점검(반기 1회)
 -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정기·수시평가)
 - *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봄(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3호)
 - 점검 결과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는 별도 시행

③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

- (법적의무) 재해 예방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

*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 (조치계획) 23회계연도의 경우,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관공통 용역비 등 편성하여 우선 집행하고 부족할 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 확보

* 유해·위험 요인 해소에 필요한 예산 편성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법적의무)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②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시행령 제4조제5호)

- (조치계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권한을 관련규정에 명시하고 평가기준을 마련 엄정한 평가 실시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 수탁 기관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63호)」에 따라 관리

⑤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사항 점검

- (법적의무) ①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②필요 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여부 점검, 반기1회 이상(시행령 제4조제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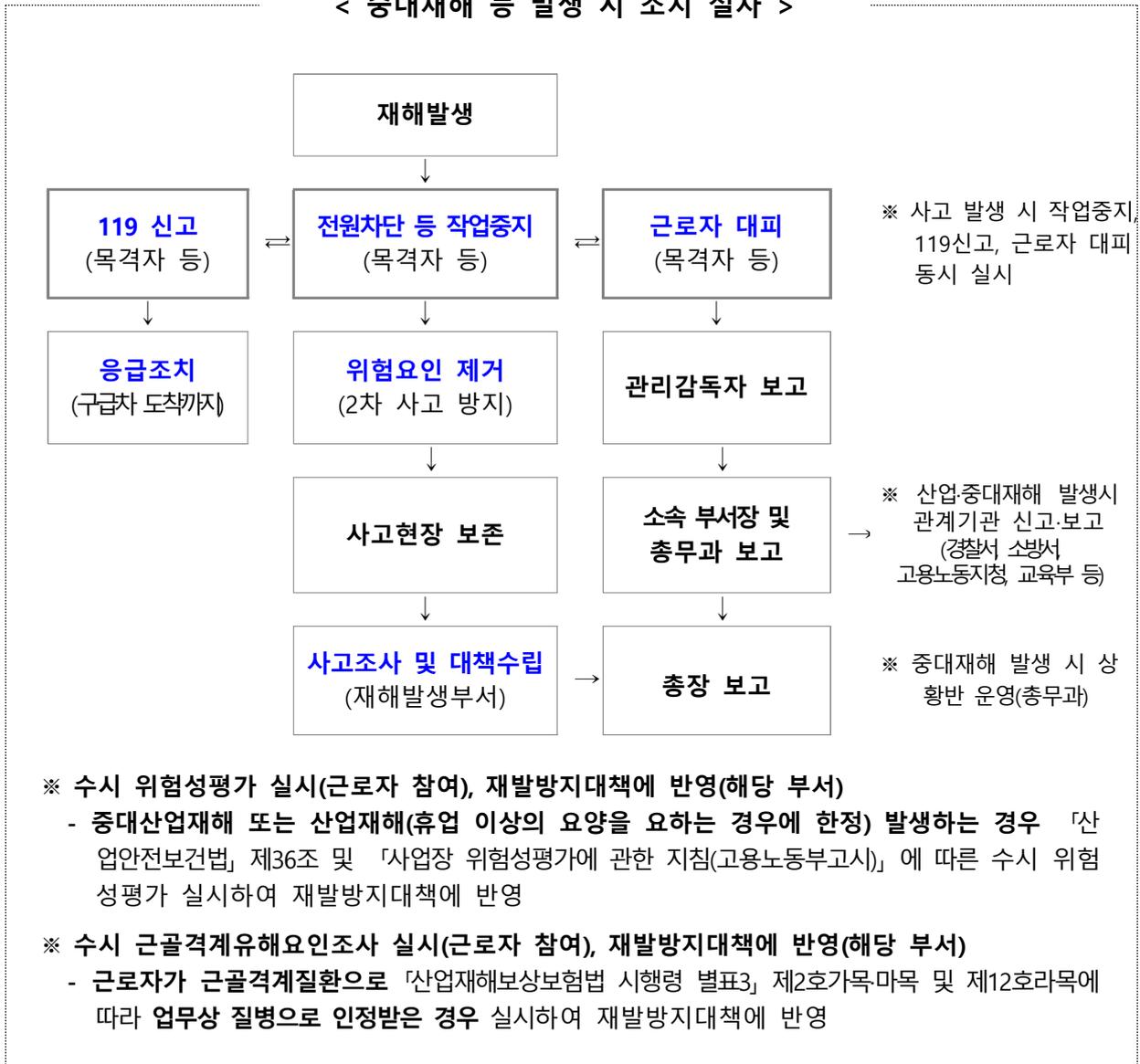
- (조치계획) 대학 종사자의 의견청취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를 통한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여부 점검

- 매년 4월, 10월을 안전·보건 달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실시

6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이행 점검

- (법적의무)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위험 대비 매뉴얼 이행 및 점검, 반기 1회 이상(시행령 제4조제8호)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

<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조치 절차 >



7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 (법적의무)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 반기1회 이상(시행령 제4조제9호)
 - (조치계획)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조치 시행여부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고려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경비)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9조(간접공사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

- (법적의무)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실시(법 제4조제2호)
 - (조치계획)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부서에서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을 실시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여부 및 이행 점검
- *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위험 대비 매뉴얼에 반영

< 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 절차 >

1. 사실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발생까지 과정 파악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수립
2. 재해요인의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찾음
3. 재해요인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간접적 원인 결정
4. 계획(대책)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재발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 수시위험성평가,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결과 대책수립에 반영

5

추진일정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 수립

-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 수립: '23. 1.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후 전부서 계획 공유: '23. 1.

산업안전보건 교육 점검

- 전문기관 및 관리감독자를 통한 현업근로자 교육 실시 점검: 분기별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은 별도 추진

'23년 안전 보건 관계 법령 이행 사항 점검

- 안전 보건 관계법령 이행 사항 점검: 반기 1회(4월, 10월)
- * 전문기관 위탁 위험성 평가 시 점검 대체

종사자 의견 청취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 안전보건 게시판을 통한 의견 수렴: 수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분기별 1회 이상